

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6. 4. 23.>

이용요금 [ ] 신고서  
[ ]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      | 처리기간    | 즉시 |
| 신고인  | 상호(명칭)    | 성명(대표자) |    |
|      | 주소 (전화: ) |         |    |

사업장의 위치

수중레저사업 종류 [ ]임대업 [ ]운송업 [ ]교육업

수중레저기구/수중레저장비 명세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탑승 구간 또는<br>대여 시간 | 탑승 구간<br>~ | 대여 시간<br>시간 |    |
| 탑승료               | 대인         | 소인          | 기타 |
| 대여료               | 적용일        |             |    |

변경 사유

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중레저 이용요금을 [ ]신고 [ ]변경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서장 귀하

처리절차

|        |   |    |   |    |
|--------|---|----|---|----|
| 신고서 제출 | → | 접수 | → | 결재 |
|--------|---|----|---|----|

신고인

처리기관: 해양경찰서